

의안번호	2219531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6.09. 08.
추 계 번호	26A442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3항·제6항·제7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2항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제6항)	의무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7항)	재량규정
2	안 제10조제3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2항²⁾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제3항·제6항·제7항(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제3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①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 ②동법 시행령³⁾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최초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안 제8조제6항), ③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지역은 6곳(여수, 서산, 포항, 광양, 당진, 울산 남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0곳임

[표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현황(2026.8월 기준)

구분	지역(주된 산업)	지정기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석유화학)	2025.5.1.~2027.4.30.
	충남 서산(석유화학)	2025.8.28.~2027.8.27.
	경북 포항(철강)	2025.8.28.~2027.8.27.
	전남 광양(철강)	2025.11.20.~2027.11.19.
	울산 남구(석유화학)	2026.06.15.~2028.06.14
	충남 당진(철강)	2026.06.15.~2028.06.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없음	

자료: 산업통상부

- 현행법 제8조제5항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⁵⁾·제16조⁶⁾·제20조⁷⁾·제21조⁸⁾·제22조⁹⁾·제23조¹⁰⁾·제24조¹¹⁾에 따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지원사업 연계우

- 4)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5)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 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6)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후 략>
- 7)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8) 제21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9)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선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산업용지 분할에 대한 특례 적용,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중으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316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표 2] 산업통상부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현황(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43)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전·후방 포함)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15,145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43)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16,000

자료: 산업통상부

10)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 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11)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지정 요건의 완화 적용 및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노종우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노종우	02-6788-4675	namsan@assembly.go.kr